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「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」

장기요양 기관은 재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(보호자)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.

1. **계약기간** :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. 단,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되었을 때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다.
2. **계약목적** :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 -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 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
 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
3. **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**
 - ① 이용료의 기준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또는 노인 복지법상 본인 부담금 수납 규정에 따른다.
 -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(15%) 본인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료 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(9%, 6%)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(0%)이다.
 - ③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% 부담한다.
 - ④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.

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2024.01.01)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069,900 원	1,869,600 원	1,455,800 원	1,341,800 원	1,151,600 원	643,700 원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 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※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630 원	150분 이상	48,250 원
60분 이상	24,120 원	180분 이상	54,320 원
90분 이상	32,510 원	210분 이상	60,530 원
120분 이상	41,380 원	240분 이상	66,770 원

○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4,670 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76,340 원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7,670 원

○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금액(원)
15분 이상 30분 미만	40,760 원
30분 이상 60분 미만	51,110 원
60분 이상	61,490 원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

구분	재가급여
일반	15 %
기초수급권자	0 %
기타 의료수급권자	6 %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9 % , 6 %

4.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

-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즉시 요구
-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용을 요구
-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(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)
-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을 변경 요구
- 급여제공범위와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
-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

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

-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
-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
-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
-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

5.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

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

-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
-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② 수급자의 의무

-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수급자,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즉시 통보 의무

③ 수급자의 권리

-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-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- 모든 어르신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-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-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, 비용(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)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.

6. 계약해지

가.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나.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④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제공 서비스 외의 부당한 “급여제공 업무 범위 외 행위” 요청이 있는 경우
- ⑤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변의 위협을 가할 때
-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7. 기타

-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(보호자)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연, 인정 기간 단위로 체결하고, 서비스 제공 시간은 1일 240분, 180분, 120분, 90분, 60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.
-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(보호자)에게 계약기간, 서비스 내용 및 시간, 서비스 장소,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, 급여제공범위,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,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, 급여제공계약서 부분 1부를 제공한다.
-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 서비스(방문요양, 목욕, 간호, 주야간 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등)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.